

2023 올댓 (수사·증거) 정오표

p.18

25줄 아래 추가

-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는 물론 신분위장수사도 가능하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제1항·제2항). **22.순경 1차**

p.30

5. 검사와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최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범죄의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몇몇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제1차적인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면서, 경찰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 ▶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0. 2. 4.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다만, 제312조 제1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최근 검경수사권 재조정에 의해 검사의 제1차적인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축소되었다. 검사의 직접수사 가능범죄로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4개 범죄는 직접수사대상에서 제외됨**),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위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2022. 9. 10. 시행>
-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검찰청법 부칙 제2조). <2022. 9. 10. 시행>

p.35 ㉠

㉠과 ㉡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 5 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동조 제2호). **21. 순경 1차**

㉡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수사준칙 제62조 제1항).

㉢ 추가

㉢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1. 순경 1차** 다만,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중지 결정(제51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를 ㉤로 변경

㉣를 ㉤로 변경하고, 아래 내용으로 교체

㉣ 불송치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 7 제1항). ▶ 2022. 9. 10.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개정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를 ㉦로 변경

p.37

㉥ 추가

㉥ 송치요구사건의 수사범위

검사는 시정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송치요구(제197조의 3 제6항), 위법하게 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송치명령(제198조의 2 제2항),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송치(제245조의 7 제2항)에 의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제196조 제2항). ▶ 2022. 9. 10.부터 시행

p.40

㉧ 추가

㉧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제198조 제4항 : 2022.5.9. 신설).

p.81

④ 21.순경1차 ⇨ 21.순경2차

p.101

(5)

①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또는 대통령의 승인)를 청구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하고 해당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제8조 제5항). **04.여경. 21.경찰승진**

①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신청(신고)하여야 한다. (×)

②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고,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처분을 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8조 제3항).

p.102

추가

③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제8조 제4항)**.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 이유·폐기범위·폐기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허가 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분(副本)을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6항).

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제8조 제8항).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8조 제9항).

p.119

㉠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21. 7급 국가직**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단서). **22. 경찰승진**

p.121

둘째줄 (제312조 제2항) ⇨ (제312조 제4항)

p.135.

③ 6째줄

①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①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영장: 사전제시원칙(예외규정○)

p.145.

4번째줄

▶ ‘음주운전 2회 이상 ⇨ 긴급체포 대상범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후 아래 범죄 ⇨ 긴급체포 대상범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2023.7.4.시행)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이상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운전(0.03% 이상)

p.174

④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④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제72조의2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동조 제2항).

p.176

㉡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제209조, 제85조 제1항).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제209조, 제85조 제3항).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제209조, 제85조제4항). **02. 형사**

① 제시되는 영장은 정본(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의 제시는 위법(대판 1997.1.24, 96다40547) **10. 경찰승진**

p.183

㉠

㉠ 피의자에 대한 구속취소 : ~~. 검사도 구속취소가 가능하며, 사법경찰관도 검사의 지휘에 의해 가능하다 ⇨ ㉠ 피의자에 대한 구속취소 : ~~검사·사법경찰관도 구속취소가 가능하다.

p.233

㉠a 영장의 제시 : 아래 내용으로 교체

㉠a 영장의 제시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19조, 제118조).

p.233

하단, 아래 내용(4줄)을 삭제

① 판례에 의하면, 위 사전 제시 규정은 현실적으로 제시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p.246

(7)

① **구속·체포 목적의 피의자수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발견을 위해 필요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제1호). ⇨

① **구속·체포 목적의 피의자수색**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발견을 위해 필요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제216조 제1항 제1호).

p.280

‘수사결과 통지와 이의신청’ 박스에 ③을 추가

③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54조 제1항). **22. 순경 1차**

p.280

기존 ③을 ④로 변경

기존 ④를 ⑤로 변경하고, 아래 내용으로 교체

⑤ 사건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 7 제1항). 22. 경찰승진

▶ 고발인 제외규정(제245조의 7 제1항)은 2022. 9. 10.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기존 ⑤를 ⑥으로 변경

p.385

㉔ ‘수사관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해서는 제31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준용된다(제312조 제5항). 따라서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피의자)진술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규정(제312조 제1항)이 준용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피의자)진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규정(제312조 제3항)이 준용되며, **검사·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서**는 검사·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에 관한 규정(제312조 제4항)이 준용된다.